

대구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나3238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나32384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가단10105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

피고, 피항소인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락

변론종결 2023. 3. 8.

판결선고 2023. 4. 5.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가단10105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4,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D와 B 사이에 2017. 1. 5.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E와 B 사이에 2019. 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자 8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는 청구취지를 함께 기재하였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인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인의 법률적 효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이 부분은 소송법상 청구가 아니라 부인권 행사임을 명시하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취지에서 제외하고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각 “F”를 “A”로, “Q”를 “D”로 각 고치는 외에는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E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의 주장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파산채권자가 행사한 채권자취소권의 범위 내에서만 그 대상이 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A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B와 피고 E 사이에 2016. 7. 19. 체결된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를 수계한 원고는 ‘B와 피고 E 사이에 2019. 2. 1. 체결된 증여계약’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7조 제1항 전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에서 파산선고 당시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 파산관재인에게 그 수계를 허용하면서 수계의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과 목적이 동일할 뿐 그 요건, 효과 등이 다른 별개의 권리인 점, 파산관재인은 제척기간 내에서는 파산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각 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파산관재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부인권의 범위를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파산채권자가 주장한 법률행위만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S 및 R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은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실질적으로 B가 배후에서 운영하는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부인 법리에 따라 R의 피고 D에 대한 2017. 1. 5.자 189,634,730원 송금행위(이하 ‘R의 송금행위’라 한다) 및 S의 피고 E에 대한 2019. 2. 1.자 85,936,314원 송금행위(이하 ‘S의 송금행위’라 하고, 위 각 송금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를 모두 B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채무자 B가 무자력 상태에서 체결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각 증여액 중 A의 채권액 한도 내인 8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인대상 행위의 존재 여부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어 회사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법리는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회사가 새로 설립된 경우뿐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은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된 경우와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영덕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회사들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배후에 있는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B가 원고에 대한 개인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S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0. 30. B가 감사로 있던 T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B와 B의 자녀인 피고들, 배우자인 U가 대표이사, 사내이사 및 감사 등으로 2017. 3. 20.까지 재직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B 및 그 가족들은 모두 등기임원에서 퇴임하였고, S의 송금행위 당시인 2019. 2. 1.부터 현재까지 S의 대표이사는 V, 사내이사는 W이다. S의 등기임원들이 B와 가족 등의 특수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R은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0. 12. 설립된 회사로서, B의 아들인 피고 E이 2017. 3. 20.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0년경부터 51%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49%의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X이 B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B가 직접 R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였거나 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한 적은 없다.

③ B의 개인 자산이 이 사건 각 회사에 이전되었다든지, 이 사건 각 회사에 유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④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B가 이 사건 각 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1인회사를 넘어 이 사건 각 회사의 법인격 자체가 무시될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회사의 송금행위가 B의 송금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회사가 송금한 행위를 두고 B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각 회사의 송금행위를 B의 송금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행위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B의 사해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세영, 판사 조세진, 판사 윤남현